

근로계약시 선지급한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의 과세방법

선지급한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서면2팀-1738, 2006. 9. 19.).

[질 의]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 보너스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 손금산입의 귀속연도는?

[회 신]

당해 선지급 사이닝 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해 설]

1. 쟁 점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를 당해 근로소득자가 근로제공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사이닝 보너스제도의 의의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 외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업 입장에서는 스카우트 비용이며 흔히 프로 스포츠에서 계약금이라 불리우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거액의 스톡옵션, 고속 승진을 보장하는 패스트 트랙어(fast tracker)제도 외에 연봉 계약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등의 사이닝 보너스 제도가 갈수록 일반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3. 사이닝 보너스와 관련한 유권해석의 변천

(1) 종전 유권해석

종전의 국세청 유권해석(서일 46011-10272, 2001. 10. 6. 외 다수)에 의하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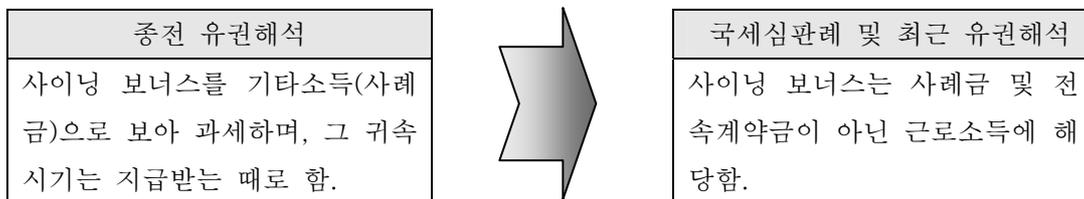
- ① 사이닝 보너스는 통상 고용을 전제로 지급되며, 계약시 약정근무기간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함.
- ② 사이닝 보너스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전속계약금으로 분류되어야 함.
=>사이닝 보너스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다함.

(2) 최근 유권해석

이에 국세심판원은 사이닝 보너스는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이라고도 볼 수 없기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국심 2004중1584, 2004. 9. 24. ; 국심 2002중983, 2002. 7. 9.).

또한, 국세청 역시 최근 유권해석(서면2팀-1738, 2006. 9. 19. 및 서면1팀-402, 2006. 3. 29)을 통하여 일정요건의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사이닝 보너스의 세무상 처리 변천]



4. 사이닝 보너스의 소득구분 및 수령자의 세무상 처리방법

(1) 사이닝 보너스 수령자(종업원)의 소득구분 등

종업원이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사이닝 보너스 지급자(회사)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는 이를 근로소득의 선지급액으로 보아 지급액을 약정 근로제공기간(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급예산입하고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과의 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월정급여액 범위내의 일시적인 가불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의 세무조정을 수행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바(서면1팀-402, 2006. 3. 29.),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실무상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로계약의 한 형태로 자리잡은 사이닝 보너스 제도에 대하여 경제적 비합리성 내지 비정상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다소 무리한 면이 없지 않음을 고려할 때 향후 사이닝 보너스를 인정이자의 계산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배제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유권 해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상기 내용은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의사결정과 그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